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1. 28(화)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5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5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2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다음 회의에서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이경제 위원장

- 제3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바> ‘한국교육방송공사 보컬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진행될 경우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명예훼손, 제4호 인사관리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바>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4-8~26)

####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조사개요입니다.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2012년 6월에는 언론에서 오픈마켓 판매자, 택배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안행부에서 택배사와 연계된 판매자에 대한 업무 공조협조를 요청해 온 바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적도 있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사 경과입니다. 작년 10월 7일~10월 19일까지 미래부의 중앙전과관리소에 위탁을 통해 현장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24일~금년 1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사결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19개사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주요 위반내용은 개인정보

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처분(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제64조제4항의 시정조치 명령 부과가 가능하고, 다만 위반건수, 과실여부 등에 대해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감경 적용기준은 생략토록 하고, 아래 과태료 부과 19개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500만원~1,300만원까지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명령으로 19개사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들쭉들쭉 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찍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을 제외한 분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처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현재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찍이 준비되어 왔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호조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검찰도 집중조사를 무기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과태료 부과 액수, 징계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500~1,000만원, 많아봐야 1,300만 원 정도면 껌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 국가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개인정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정도로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정도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대폭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나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최대까지 확대하는 법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그런데 1개사만 의견진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처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그분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그다음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본인이 신청해 왔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현재 (주)D.S.물류 앤 유통에서 의견진술해 왔다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1개 회사만 의견진술을 신청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D.S.물류 앤 유통 측 관계자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주)D.S.물류 앤 유통 측 관계자가 오셨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표 과장, 맞습니까?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사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예, 오늘 일이 생기셔서요.

○ 이경제 위원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주)D.S.물류 앤 유통 측의 입장을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우선 저는 (주)D.S.물류 앤 유통이라는 조그마한 유통회사에 다니는 영업과장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350만 정도의 판매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인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려서 이해를 시킬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기분입니다. 저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잡아당기는 것이지요. “너 이것 잘못했으니까 돈 내라.”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챙겨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또 그다음 날 되면 또 돈을 벌어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법 제도가 생겨남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뀔지 모

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키라는 법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초 정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몇 분과 그다음에 중앙전파관리소 쪽 포함해서 세 분이 오셨는데 내용인즉슨 저희가 4대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공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판매자들은 아주 바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하나만으로 저희가 타깃이 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영세한 회사지만 자그마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충분히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똑같은 것인데 사업자가 여유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하는데, 국민들에게 '도둑질하지 마세요.'라고 공문을 다 못 보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의무영역이 었지 않습니까?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 다루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조치들을 몰라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희가 몰라서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법들이 저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모든 사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관련된 법, 그리고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 이 회사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지켜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셔서 "몰랐다, 그리고 여력도 없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이 지나가는데 뒤통수 잡아끌고 너 이것 안 했냐고 한 방 쥐어박고 벌금 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민감한 부분들이 최근 금융사태 터지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찍부터 계속해서 영세사업자들 큰 사업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왔었습니다.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경고 조치를 취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오픈마켓에서 6년, 7년 일을 해 왔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공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공문을 보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의 의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어떤 규정 속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랐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왜 벌을 받는 것입니까?

○ (주)D.S.물류 앤 유통 영업과장

- 저희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벌을 주신 이유는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과 두 번째로는 저희가 플레이오토에서 제품을 끌어당겨서 개인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플레이 오토 쪽에 쫓다는 2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는 개인쇼핑몰이 아닙니다. 개인 쇼핑몰은 충분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깃이 개인쇼핑몰이 아니고 오픈마켓이라는 것이지요.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판매자들한테는 충분히 계도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반상권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십시오.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먼저 이 사업자를 조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1년 동안 오픈마켓 4곳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건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열 사람한테 팔았을 때 10건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거래한 4개사, 한 오픈마켓에 5개 사업자로 총 20개인데 서울에 15개, 경기도에 5개를 선정했고 지금 대상업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1년 동안 개인정보 처리건수가 많았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했고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2012년 8월부터 4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자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올릴 때 이렇게 온라인 판매점 사업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접속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항목 체크리스트를 체크했습니까?' 확인하고 체크했을 때만 일반인과 물건을 거래할 수 있게끔 2012년 8월부터 그렇게 했고, 2013년도에 보통 조사를 나가면 사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도둑을 잡으러 갈 때 도둑 잡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영세사업자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까지 안행부와 합동으로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우리가 실태점검을 나가겠다, 대상은 온라인 판매사업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 사업자에게는 9월 27일 조사문서를 발송했고, 9월 30일 사업자가 조사문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저희들이 조사를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사 나가기 이미 20일 전에 조사문서까지 다 발송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특이하게 보도자료까지 냈고 2012년 1년 전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킨 것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별도 조사항목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위반한 행위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는 누가 접근했는지 6개월 동안 접속이력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접속이력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보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기 업무를 수탁을 줍니다.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업무를 수탁을 줬을 때는 수탁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잘 보관했는지,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를 징수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 사고가 났을 때 카드사가 용역업체에 줄 때 용역업체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 업체는 수탁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수탁업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잘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나 각종 관리감독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멀리 오셔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의견진술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처분 방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방금 의견진술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저도 의견진술이 있는 줄 몰랐다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체 대표가 오시기로 했다가 안 오시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대표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분한테 질문을 이리 저리 해 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 다만 다음에 의견진술을 진행할 때는 책임 있게 대표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사실 이렇게 처음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 관대하게 저희도 경고를 하고 이런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의 처벌수위도 올라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서는 물론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충분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무국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오남석 국장이 행정처분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앞서 보고 드린 내용 19개 사업자에 대해서 3페이지에 있는 박스 내용대로 500만원~1,300만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19개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2월 28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있고 시정조치 명령도 함께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따로 2가지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문석 위원이나 김대희 위원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금융,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절차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마침 지금 보고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의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의 문제는 방통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안행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방통위의 역할 내에서 이런 조치가 처음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Google Inc. (2014-4-27)**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두 번째 안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Google 건인데 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조사개요입니다. 대상사업자는 미국 소재에 있는 Google입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자본금 27조 3,804억원이고, 매출액은 전 세계적으로 43조 5,957억원입니다. <나>번 조사 배경입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인천(일부)지역의 거리를 촬영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요 경과입니다. 2010년 5월에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10년 8월부터 ‘12년 2월까지 경찰청에서 구글 수사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4월부터 ‘13년 12월까지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4년 1월 행정처분(안)을 사전통지했고 구글로부터 의견조회 및 접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형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 자료에 의하면 구글은 이용자에게 개별 부여된 아이디·비밀번호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외에도 총 64,000여건(‘604,000여건’으로 정정)의 맥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고, 여기에는 송·수신 IP, 송·수신자의 이메일 주소 등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안) 검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먼저 과징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및 제6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구글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 조정을 거친 경우에 과징금은 1억 9,300만원

이고, 그다음에 임의적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임의적 조정은 조사에 비교적 협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기 금액에 30%를 가중하여 최대 2억 5,090만원을 부과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치입니다.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관련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삭제하고, 삭제 과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홈페이지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되 공표의 내용, 위치, 크기 등은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명령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 고발 관련은 이미 검·경의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억 9,300만원을 산정하고, 지금 이로부터 30%까지 가중 가능하고, 최대 2억 5,090만원이 된다고 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30%나 20%나 10%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30%까지 가중이기 때문에 임의적 가중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할까, 하는 경각심이 대단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구글의 한국지사가 이번에는 관여한 것은 없지만 각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중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이 같은 사안으로 전체 몇 개국에서 징벌을 받았지요?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외국은 6개국이 부과를 했고, 17개국은 조사를 했는데 과징금 부과 처분 없이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몇 개 나라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에서도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바가 있지요?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독일은 한화로 환산했을 때 2억 1,000만원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ICT코리아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ICT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의식을 고려해서 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측면에서 10% 추가 가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에 있듯이 30%까지 가중이 가능한데 최대로 30%를 다 하면 2억 5,090만원이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지금 사무국이 내놓은 방안대로 30%까지의 가중은 아주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의 가중을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서 답을 내주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이 아까 보고하시면서 604,000건을 64,000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읽었습니다. 604,000건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상당히 악의적인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문제제기했었을 때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다가 불과 한 달 뒤에 자체 버그가 나면서 사실을 시인했고, 그리고 현재 검찰이 기소중지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앞에 국내 영세사업자들이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최대 1,300만원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2억 5,090만원이 정말 소소하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는 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초 위반행위 50%를 의무적으로 감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50% 감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에서 이래저래 모든 것들을 다 가중하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대치가 2억 5,09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검찰에 기소중지 상태인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구글사를 소환

하는 그러한 결의문이나 건의문이나 협조문을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검찰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들이 구글 관련 조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분과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검찰 쪽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 쪽으로 저희들이 회신해 주려고 합니다. 사전에 검찰 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자료를 다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6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중간에서 털어갔고, 그들이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식별을 하기 위해서 분류하지 않았다는 등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언제든지 칼로 쓰려면 칼로 쓸 수 있고 무기로 쓰려면 언제든지 무기로 쓸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법을 닦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명확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자 라인에 있어서 검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검찰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구글 본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협조요청을 강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결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행정적으로 과징금으로 끝나지만 혹시라도 범죄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일단 검찰에 물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또 그대로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액수에 대해서 마지막...

○ 이경재 위원장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경우가 처음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과거에 애플코리아,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데 애플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것은 한국 법인이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글 본사에 대한 업무처리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국제적인 기업 보호 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구글이 과징금 처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거는 것보다는 처분을 받겠다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가 어떻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확인을 받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관련되는 법률대리인을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매우 존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본인이 미국에 갈 때 구글 본사를 방문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논의하러 갈 때에 그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구글과 다른 나라 관계는 복잡하지만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려고까지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결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적인 사안은 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왜곡 또는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법적인 조치 문제는 별도로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10% 가중하자는 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수사와 관련된 것들은 다 각 기관마다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과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액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충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협조를 상당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10% 정도 가중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여기 행위의 대상이 된 구글은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법에 의해서 과징금 이든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구글 측에서 결정적인 증인의 소환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기소중지

가 된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액 가중사유를 30%가 아니고 10%를 적용하자는 말씀으로 해 주신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것이 보니까 가중을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사무국에서 올린 안은 최대 가중을 해서 30%로 적용하면 2억 5,000만원이고, 김 부위원장님 말씀은 10%만 적용하면...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2억 1,230만원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2억 1,230만원이고, 그 금액을 놓고 결정하자는 말씀이시라서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뜻이지요.

○ 이경재 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가 있는 것 같고...

○ 양문석 상임위원

- 왜 최대 가중을 하지 않고...

○ 김충식 부위원장

-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고의성이 없는 일이라고 구글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풀어서 쓴 일도 없고 전부 패키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사무국에서 상당히 촘촘하게 1억 9,300만원 기준 과징금을 정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가중의 범위가 30%쯤 있어서 맥시멈 2억 5,09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할 때 최소한의 가중은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금 국민의 정서와 여러 가지 분위기와 또 독일에서 2억원이 넘는 액수를 부과했다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내용을 나중에 숫자를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재처분에 관한 건 (2014-4-28)**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재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 처분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원 처분을 취소한 후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아래 박스를 보시면 먼저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행정처분,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것은 방통위가 승소를 했고, 과징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징금 부과 시 산출내역을 업체에게 제시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 2심입니다.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통위가 승소를 했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절차적 이유로서 1심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1심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산출내역을 제시한 후 재처분이 가능하고,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봐서 1심 때 항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는 2012년 6월에 위원회가 처음에 처분을 내렸고, 그다음에 2012년 7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2013년 5월에 1심 판결이 있었고, 2014년 1월 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재처분 처리 방안입니다. 원 처분 취소인데 서울행정법원이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산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원 처분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절차적 하자 치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을, 기타 고려요소 등 산출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재산정입니다.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 소명한 내용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원 처분인 「2억 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1억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난번 이 문제, 회의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법률자문으로 가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고기를 잡아놓고 그물이 새서 나가서 또 그물 들고 나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실무진들이 절차적으로 간과한 데 대해서 두 번이나 재판을 패소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실무진들이 소송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국악광주FM방송국 (2014-4-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 유입입니다. 신규 국악광주FM방송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허가신청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국악방송이 광주광역시 일원과 전남 나주시와 담양군 일부에 대해서 국악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악광주FM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국악광주FM방송국은 656.5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기본계획 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0점 미만 방송국에 대해서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등 신규 지역에 국악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점, 기존 방송사업자의 방송국 개설이라는 점에서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등을 통한 지역성 구현과 인력운영 등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관련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미래부는 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요건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혼신원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미래부의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하되, 신규 허가인 점을 고려해서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으로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제작 계획, 경영효율화 방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 계획 및 지역거점 방송국 운영계획 등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토록 하며, 혼신해소 노력 및 방송주파수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등 다른 방송국 허가시 부과한 조건을 동일하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해당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허가증을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4개 사업자 (2014-4-30~33)**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내용과 이행점검 결과입니다. 시정명령 내용으로는 (주)조선방송에게 외주제작비율 준수,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재방비율 준수, 공정선거방송·공정보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명하고,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및 (주)매일방송에게는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점검 결과 종편PP 4사 공히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준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주)조선방송은 외주제작비율 준수와 공정선거방송특위 및 공정보도특위 구성 관련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는 종편PP가 1~2개 선정될 것을 가정한 것인데 현재 4개 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재검토하거나 과징금 금액을 50%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재여부입니다. 피심인의 의견과 같이 방송시장 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다소 어려워졌고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이 방송법령에 직접 명기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재방법은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업무정지가 시청자 불편이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시청자 불편이 우려되고 승인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재수준입니다. 피심인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 기준금액인 3,000만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종편 문제는 그동안 회의에서도 늘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약속 위반, 콘텐츠 투자계획을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재방비율도 아주 높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보도, 내용도 걸러지지 않은 해설이 과잉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실망을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의 징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종편이 국민에 대해서 기만한 것이고, 승인 행정청인 KCC 방통위에 대해서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해당 사업자들은 “과다(過多) 선정이 되어서 예상치 못한 상업성의 결여로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표할 때 몇 개를 선정한다고 제시한바 없습니다. 김용일 과장, 우리가 종편을 몇 개 선정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응모를 할 때 ‘몇 개가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국민과 행정청에 대한 약속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승인요청서는 사업자가 넷이 선정되고 나서 자기들 손으로 적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을 가지고 있는 대신문사들이, 또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써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돈을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이것은 저자거리의 행상들이 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신문·방송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투자 위반의 액수, 또 재방비율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김용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TV조선의 콘텐츠 투자 비중이 약속 대비 얼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약 16% 정도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채널A는 얼마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18.3%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JTBC가 45%쯤 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44.6%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매일방송이 한 35% 정도 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약속 대비 5분의 1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신문 사설이나 방송 해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구육을 팔고 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약속위반을 방기하는 행정청은 뭐하는 것이냐, 무능이다, 무자격의 영업소는 정지시켜라, 틀림없이 그렇게 사설을 쓰고 해설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재방비율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TV조선의 재방비율이 얼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13년도에 43.5%로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사업계획 대비 배가 넘는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2배가 약간 안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채널A는 어떻게 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채널A는 사업계획이 22.6%인데 실제로는 46.2%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매일방송도 48%이기 때문에 계획서 29%보다 훨씬 넘는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JTBC는 62%가 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사업승인시에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승인요청서를 내놓고 실천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의 반을 다시 돌리고, 돈 없으니까 보도인력과 외부의 어중간한 해설가들 동원해서 하루 종일 되풀이하는, 그것으로 연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행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지가 몇 달 되지요? 반년쯤 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5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동안 단 한 가지도 개선하거나 노력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와서 '원점에 돌아가서 보면 종편사업자를 아주 많이 선정한 바람에 저희들이 장사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기준과징금 3,000만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스로의 약속을 언론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이렇게 기만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파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반성을 통한 재투자의 시도조차도 엇볼 수가 없다, 그리고 축소된 예산으로 계속 세월을 보내겠다, 이런 사업자들을 승인주체인 방통위가 그냥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이렇게 기준과징금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감정이나 행정청의 책임으로는 영업정지가 마땅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방송법 제19조에 시청자에게 심히 불편을 주고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고 할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선이 1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에는 1억원 이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0만원이며, 여기서 50%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시행령에 따른 법정상한액이 3,000만원이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민 감정과 또 행정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50% 가중이 가능하다고 할 때 50%를 가중해서 4,50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편 4사가 4개나 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송사는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허가 과정에서 여러 경쟁사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 4개가 뽑힌 것이지요. 그리고 그 뽑힌 근거가 바로 이러한 콘텐츠 투자규모나 이러한 것들이 뽑힌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정의 이유를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선정 취소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봐 주어야 하는 행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조선이 2012년 이행하지 않은 투자금액이 971억원, '13년 투자 계획한 금액이 1,609억원 합해서 2,580억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달랑 414억원 16%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정의 근본적인 이유도 부인·부정한 것뿐만 아니고 4개가 아니라 2개라고 칩시다. 2개라고 쳐도 최소한 이행률 50%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행률이 16%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방송통신위원회의 사기행각이자 스스로 선정의 이유를 부정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방비율 봅시다. MBC·SBS, KBS는 수신료 때문에 그렇다 치고 MBC, SBS의 동일 기간 재방비율이 19.7%인데 TV조선은 43.5%, JTBC 62.2%, 채널A 46.2%, 매일방송 48.7% 거의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재방비율들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끊임없이 틀고 그리고 유일하게 근거가 이 재방비율이든 투자금액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면 2개 생각했으면 최소한 재방비율은 50% 이하로 줄여야 하고 투자금액은 50% 이상 갠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종편에 대해서 우리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일절 투자금액의 확장이나 제대로 된 장르의 구성이나 장르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없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액으로 똑같이 3,0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김충식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과징금 3,000만원에 가중 50%를 더 해서 4,500만원으로 하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또 언제 모니터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지요? 고칠 때까지, 약속 지킬 때까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출되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2011년부터 금년 3월까지의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승인유효기간이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는 시청자의 불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순차적 영업정지로 했던 것이 통신에 대한 영업정지였고, 그리고 이 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순차적 영업정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선정의 근본적인 이유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변명을 하더라도 최소한 50%도 안 되는 투자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불편 해소라는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순차적 업무정지를 통해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또한 최대치로 4,5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김대희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편이 처음 선정할 때부터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시다만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기다려봐야 그 성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시다. 3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보면 아직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 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종편이 제시했었던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 위원 님께서 업무정지를 말씀하셨는데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킬 때 신규가입 금 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 방송의 경우에는 신규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국 보고내용을 보 다가 약간의 맹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승인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 가 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유효기간 단축은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종편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 모르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시점이 애매하 게 겹쳐져서 승인유효기간 단축은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말인지, 저는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음번 심사에 넘겨서라도 줄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는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 승인과 연계시켜서 승인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저 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시다만 처분대상 4개 방송사 모두가 결국은 향후에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사가 모두 다 재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 설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시다만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승인유효기간 단축 처분을 감안해서 승인유효기간을 다시 방통위가 정했다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승인대상 방송 사와 승인기간을 고려해서 그것을 지금 넘겨서 그때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은 것 으로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김대희 위원님 방송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대구MBC에 업무정 지처분 부과한 적 있지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과장, 이때 업무정지 처분이라 함은 정확하게 광고영업 중단이 업무정지 처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송중지입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채널 PP에 대해서 업무중단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중단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출을 중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송법에서 업무정지라고 했었을 때 송출 중단을 상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을 만들 때도 그러한 업무정지는 제가 이해하는 법 정신은 송출중단이라고 보는데, 업무정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분히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면 최소한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이 말 그대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 콘텐츠 투자금액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률 16%, 18%, 35% 이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행정기관이 무엇을 했느냐고 했을 때 달랑 4,500만 원 부과하고 손을 툰다, 이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자신의 선정의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것 왜 부과합니까? 이후에는 제대로 투자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방송 만들어라, 그래서 시청자의 권익을 확대해 줘라라는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엄벌을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가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래서 업무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스테디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하던 이야기에서 승인유효기간 단축 부분은 물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단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서 재승인을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승인유효기간 단축보다 더한 제재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제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년 이맘 때쯤 작년도 말 실적을 집계해서 1, 2개월에 재승인 심사를 들어가면 항상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유효성 있는 카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 ○ 홍성규 상임위원

-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방송 분야가 신규 방송이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깔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SBS가 자리 잡는데 10년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판단 미스였다는 부분은 반드시 인정을 했고, 또 스스로 그 정도도 판단 못 했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방송 초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래서 적어도 3년 또는 5년 정도 인큐베이팅 기간이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작금의 미디어 시장 상황을 보면 광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방송산업이 상당한 블루오션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어느 틈엔가 레드오션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면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업무정지를 했을 경우에 영업수지는 더더욱 나빠질 것이고 투자는 더더욱



안 될 것이고 악순환이 올 것이다, 나중에 예를 들어 재승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결국은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부분은 곤란하다, 그다음에 저는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초기 사업이라는 점, 또 최근에 방송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 굉장히 강경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차등해서 할 수 없나, 예를 들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JTBC는 반 정도의 투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또 크기를 보니까 재방비율이 아주 높더라,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사무처에서 가지고 온 3,000만원 정도면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계속해서, 아주 오래 된 미신 같은 논리들이 있는데 ‘인큐베이팅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가 앞서 생계형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법대로 500만원에서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작업복 그대로 여기까지 와서 읍소를 한 현장의 시민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인론사가 언제까지 ‘인큐베이팅 기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옹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애초에 종합편성채널을 반대했던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을 아주 객관적으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고, 그리고 사업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왔다, 이것이 갑자기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2000년 접어들면서 방송은 사실상 사양산업의 문턱에 섰던 것들을 2010년도에 받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부분입니다. 해도 해도 이것이 도대체 방송사가 정부에 약속한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 선정기준이고, 선정의 근거였는데 이것들을 마음껏 유린해 놓고 지금 와서 사실상 배 짜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부가 그 배 짜라는데 지지하고 독려하고 옹호하면 어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징금 문제나 제재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결정하지 않고 따로 다시 재논의해서 업무정지부터 근본적으로 이 제재 수준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나 인큐베이팅 기간 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리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블루오션, 레드오션 부분도..., 그렇지요.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도 그전부터 했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안 해 본 사람들은 꼭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틀이 있냐 하면 지금 재승인과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재승인을 위해서 새로 또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관계나 재방비율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통위로서의 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정하는데 아주 무리하지 않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제가 의견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법의 영업정지 부분을 자세히 보면 2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라고 해서 영업정지라는 것이 본격적인 송출 중단이기 때문에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 놓은 법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볼 때, 또 지금 홍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는 본격적인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3월이면 구성이 되어서 충분히 심사가 한 달 동안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애당초 주장했던 대로 기준 과징금 시행령상의 3,000만원에 추가 가중을 50% 한다면 4,500만원이 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가능한 액수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4,500만원씩으로 올려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다시 새로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 하나의 뷰티 콘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했던 선정의 근거와 자신들이 약

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고 분명한, 새로운 재승인 과정에 있어서의 서류 제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엄격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징금은 당연하고요.

○ 이경재 위원장

- 김대희 위원님께서서는 아까 업무정지까지 가는 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과징금에 대해서 홍성규 위원님께서서는...

○ 홍성규 상임위원

-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기왕 회의에 나온 것이니까 지금 양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재승인 때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게 사실 방송분야는 그렇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영업정지 순차적으로 한 것과 방송분야에 있어서 영업정지가 갖는 파장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방송의 품질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 기준을 사무처에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또 김 부위원장님은 거기에 50% 가중해서 4,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가중을 하되 25% 정도 가중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두 분이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계형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갖는 성격이나 그 과징금이 예를 들어 돈이 얼마건..., 아까부터 솜방망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를 하면 솜방망이 안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4,500만원을 다 하더라도 솜방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업무정지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업무정지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의 업무정지라는 것은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홍 위원님,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예, 심각한 것 압니다. 저는 그렇게 제의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업무정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신데 어떤 의견입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제가 승인유효기간 단축 이야기를 한 것은 좀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사무국 의견은 재승인을 앞두고 이것이 어렵다고 검토한다면 과징금으로 가중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약속한 돈을 못 낸다는 돈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방송내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4개 중편이 사실은 몇 개월보다도 지금 시청률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나름대로의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밋다고 해서 시청권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 김충식 부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아주 중대한 사회적 문제나 이런 내용과 관련된 위험스러운 것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계획에 관한 것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경고조치 차원에서 지금 사무처에서 올린 3,000만원에서 중간선을 따져서 25% 가중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충식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25%면 얼마가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액수가 750만원 차이는 사업자들에게 크고 작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렇게 생각하면 더 플러스 25%해서 플러스하는 것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중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25%를 가중하는 선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14-4-34) (비공개)**

##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0분 폐회 】